

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38
- 나. 제 출 자: 김동협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및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청년의 대상 범위 명시(안 제2조)
-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으로 개정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안 제7조)

- 다. 기존의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편 (안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 라.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신설과 청년활동 지원 방안의 구체화 (안 제12조제3항, 제4항)
- 마.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 바. 각종 청년지원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통합 신설 (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5항
- 「청년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다. 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4. 5. ~ 4. 10.)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구 협력사업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각종 청년지원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개별조항 검토 (안 제2조)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별 법령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와 같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조항에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을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개별조항 검토 (안 제5조)

-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기존의 상설로 운영되던 청년정책위원회

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해측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의 회의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신설과 청년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였음.

개별조항 검토 (안 제12조)

- 「청년기본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수립(제1항),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강구(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직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19조는 제목을 기존의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에서 “청년의 건강 증진”으로 개정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 하였으며,

- 안 제23조에 업무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청년시설 운영 및 안 제12조의 청년활동 지원, 제19조의 건강 보호·증진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시·구 협력사업으로
-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 이에 우리구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 활동 지원과 건강 보호·증진의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새로운 지원항목을 신설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청년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청년의견의 정책반영 및 회의 시 마다 새로 구성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시-구협력사업 지원분야

□ 강서구비 지원사업: **91억 2,650만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32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94억원**

소상공인 지원 [22.94억원]	① 폐업 소상공인 지원 (구비 100%)	9억원 [1,920개]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9억원
	②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 지원 (구비 100%)	13.94억원 [1,000명]
	·1,000명에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지원	13.94억원
취약계층 지원 [61.1억원]	③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시비 80%, 구비 20%)	7.3억원 [34,681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	7.3억원
	④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구비 100%)	53.8억원 [10,665명]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	53.8억원
피해업종 지원 [4.475억원]	⑤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구비 100%)	5천250만원 [1,036개]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1,036개, 시설당 50~100만원	5천250만원
	⑥ 어린이집 지원 (구비 100%)	3.35억원 [335개]
	·구 소재 어린이집 335개소, 시설당 100만원 지원	3.35억원
	⑦ 지역아동센터 지원 (구비 100%)	2천만원 [20개]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20개, 시설당 100만원 지원	2천만원
	⑧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구비 100%)	4천만원 [4개]
	·마을버스 업체 4개, 업체당 1천만원 지원	4천만원
자율지원 [2.75억원]	⑨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구비 100%)	2.75억원 [550개]
	·종교시설 550개소(추정), 개소당 50만원상당 방역물품 지원	2.75억원

□ 서울시비 지원사업: 123억 6000만원+ α

소상공인 지원 (101.5억원)	⑩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시비 100%)	101.5억원 (14,025개)
	▪집합금지 업종(연장) 1,377개, 업체당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완화) 816개, 업체당 120만원	30.5억원
	▪집합제한 업종 11,832개, 업체당 60만원	70.9억원
피해업종 지원 (221억원+ α)	⑪ 운수종사자 지원 (시비 100%)	17.4억원 (3,481명)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	17.4억원
	⑫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시비 100%)	5.04억원 (1,540명)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원 - 우리구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 보유자 1,540명	5.04억원
	⑬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시비 100%)	별도추계(α)
▪관광·MICE 소상공인 5천개사, 업체당 2백만원 지원 - 우리 구 관광사업체 518개 중 소상공인 업체 신청 지원		

※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해 소관 부서별 집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용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

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